



# 독일의 노인 사회참여활동 지원에 관한 법제

정보신청기관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I. 독일인구구조의 특성 - 초고령사회

독일은 출산율이 낮고 고령자 비율이 매우 높은 사회이다. 1960년에는 20세 미만 인구의 비율이 28.4%였는데, 2010년에는 18.4%로 줄었다. 반면 1960년의 60세 이상 인구 비율은 17.4%였는데, 2010년에는 26.3%로 증가하였다. 2011년 현재 독일의 전체인구는 약 7천9백 만명인데, 이 중 80세 이상 인구도 430만 명에 이른다. 독일정부에 따르면 2060년까지는 60세이상 인구가 39.2%로 증가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sup>1)</sup> 65세 이상 인구는 2011년 기준으로 독일 전체 인구의 21%에 이르고 있어<sup>2)</sup> 독일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sup>3)</sup>



- 1) Statistisches Bundesamt: Langhe Reihen: Bevölkerung nach Altersgruppen, 12. koordinierte Bevölkerungsvorausberechnung: Bevölkerung Deutschlands bis 2060, (<http://www.bpb.de/nachschlagen/zahlen-und-fakten/soziale-situation-in-deutschland/61541/altersstruktur>).
- 2) Statistisches Bundesamt, Alter in Wandel, 2012, p.1. 참고로, 유럽 전체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11년 기준으로 17%이다.
- 3) UN은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이상 14%미만인 사회를 고령화사회, 14이상 20% 미만인 사회를 고령사회,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표 1〉 독일의 인구변화와 연령구조(1960년~2060년)

연도	전체 인구수 (단위: 백만)	전체인구 중 연령대별 인구 비율		
		20세 미만	2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1960	73.1	28.4	54.2	17.4
1970	78.1	30.0	50.0	20.0
1980	78.4	26.8	53.9	19.4
1990	79.8	21.7	57.9	20.4
2000	82.3	21.1	55.3	23.6
2010	81.8	18.4	55.3	26.3
2020	80.4	17.0	52.4	30.5
2030	79.0	16.7	47.1	36.2
2040	76.8	16.1	46.6	37.3
2050	73.6	15.6	45.5	38.9
2060	70.1	15.7	45.1	39.2

※ 출처: 독일연방통계청(Statistisches Bundesamt)

이와 같이 고령자 비율이 대단히 높은 사회 특성상 독일에서 노인 관련 정책은 매우 중요하고, 고령자 고용 촉진 등을 통한 노인의 경제 활동 참여 뿐만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사회참여(Bürgerschaftliches Engagement)”가 전 사회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독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법제 마련, 정부에 의한 관련 정책 추진 및 지원과 전국 규모의 노인 단체에 의한 활동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 정부에서 노인 문제를 관할하는 부는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이다.

## II. 독일의 노인 사회참여 활동 현황과 관련 법제 개관

무보수명예직 등을 통한 자원봉사활동은 노인들이 가정생활이나 직업활동을 통해 오랫동안 축적해 온 경험, 지식, 기술, 능력 등을 자원 봉사 형식으로 사회에서 유용하게 활용함으로써 적극적인 사회활동의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독일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전국규모의 노인단체인 “연방노인조직업무공동체(Bundesarbeitsgemeinschaft der Senioren-Organisa-

tionen e.V.)”<sup>4)</sup>가 2013년에 실시한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자원봉사 활동 참여자들 중 절대 다수는 60세 이상 노인들이라는 점을 통해서도 노인들에게 자원봉사활동이 갖는 의미를 알 수 있다. 즉, 총 24,682명이 참여한 154개 자원봉사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 의하면 자원봉사 참여자 중 60세 미만은 12%, 60~69세는 57%, 70~79세는 28%, 80세 이상은 3%로 60세 이상자가 88%를 차지하고 있다.<sup>5)</sup> 노인자원봉사자들의 봉사활동 영역은 다양한데 약 51%는 문화, 여가시간, 자연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였고, 약 47%는 청소년이나 어린이를 가르치는 등의 지식을 전달하는 활동을 하였다. 그밖에 이웃을 돕는 활동, 보건 관련 활동, 도움이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는 활동 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6)</sup>

독일 현행법상 노인을 포함한 시민의 사회봉사활동이나 기타의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법률로는 2011년 4월 28일에 제정되어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연방자원봉사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en Bundesfreiwilligendienst)(이하 “연방자원봉사법”이라 함)과 2013년 3월 21일에 제정된 「명예직 강화에 관한 법률」(Das Gesetz zur Stärkung des Ehrenamts)(이하 “명예직강화법”이라 함)<sup>7)</sup>이 있다. 독일에서 명예직 활동(Ehrenamtliche Tätigkeit)은 원칙적으로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활동을 의미하고, 공익 관련 자원봉사와 거의 동일하거나 매우 밀접한 관련 개념으로 이해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 자원봉사자들의 절대 다수는 60세 이상 노인들이기 때문에 연방자원봉사법과 명예직강화법에 규정된 내용들은 노인들의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는 법률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연방자원봉사법에서는 주로 자원봉사자들의 지위, 활동기간, 활동할 수 있는 근무처, 활동 영역 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고, 명예직강화법은 시민들의 명예직 활동을 통한 사회참여를 고취시키기 위한 관련 공익 법인과 활동가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 책임의 완화 등을 위한 기존 세법, 민법, 유한회사법 등 각종 법률의 개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4) 이 단체 산하에 100개 이상의 노인단체가 있고, 이들 단체에 약 1천3백만명의 노인이 가입하고 있다. 노인의 정치, 경제, 사회 관련 이익을 대변하고 각종 프로젝트를 통한 연구조사, 출판, 세미나 등의 행사를 수행하고 있다(<http://www.bagso.de/die-bagso.html>).

5) Die BAGSO, Ergebnisse der BAGSO-Befragung “Freiwilliges Engagement älterer Menschen – Was hat sich bewährt? Was muss sich ändern?”, 2013, S.5.

6) Die BAGSO, Ergebnisse der BAGSO-Befragung “Freiwilliges Engagement älterer Menschen – Was hat sich bewährt? Was muss sich ändern?”, 2013, S.7.

7) 시행일은 조항별로 2013년 1월 1일, 2014년 1월 1일, 2015년 1월 1일 등 다르게 정해져 있다.

### III. 연방자원봉사법에 의한 자원봉사 제도

#### 1. 연방자원봉사법 제정과 자원봉사제도 수립의 배경 및 목적

독일의 자원봉사제도는 연방자원봉사법이 적용되는 자원봉사(Freiwilligendienst: BFD)와 청소년자원봉사지원법이 적용되는 청소년자원봉사(Jugendfreiwilligendienst: JFD)<sup>8)</sup>로 나뉘고, 자원봉사는 만 27세 이상인 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연방자원봉사법의 제정과 연방자원봉사제도 수립은 무엇보다도 2011년 7월부터 독일의 징병제가 폐지되고 대체복무제도인 공익근무(Zivildienst) 역시 폐지됨에 따라 수십년 동안 사회 곳곳에서 시민을 위한 공익적 활동을 담당해 온 인력의 공백이 발생하는 거대한 사회적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점에 기인한다. 즉, 기존에 공익근무요원들이 주로 담당했던 공익분야의 활동을 연방자원봉사자들이 담당하도록 하면서 이들에게 최소한의 금전적, 물적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연방자원봉사제도의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에 공익근무법(Zivildienstgesetz)에 의해 인정되었던 공익근무지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지로 인정된다. 이를 통해 궁극적

으로는 독일 내에서 새로운 자원봉사 문화를 만들고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대중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지향한다.<sup>9)</sup>

연방자원봉사법에서는 연방자원봉사자의 임무가 사회적, 생태학적, 문화적 영역, 스포츠, 통합, 시민보호, 자연재해로부터의 보호의 영역에서의 공공의 복지를 위해 활동하는 것이고 평생교육을 지원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연방자원봉사법 제1조).

#### 2. 연방자원봉사법의 주요 내용

##### 1) 자원봉사자의 요건과 활동 기간

연방자원봉사법에 의한 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은 전일제 공교육의 의무를 모두 마친 자로서 만 27세 이상인 자이다. 자원봉사자는 소득활동의 목적 없이 풀타임으로 활동하게 되는데 주당 20시간 이상의 파트타임 활동도 가능하다. 자원봉사자는 연방과 자원봉사자간에 서면합의에 근거하여 일반적으로 12개월, 최소한 6개월, 최대 24개월간 자원봉사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 제8조). 한편 과거 의무복무제 하에서 공익근무가 그러했던 것과 같이 연방자원봉사는 노동시장에 대해 중립적이기 때문에(제3조 제1항) 고용되어 있는 노동인력을 대체하거나 위협하

8) 청소년자원봉사지원법(Das Gesetz zur Förderung von Jugendfreiwilligendiensten)은 2008년에 제정되었다.

9) 독일연방자원봉사 홈페이지 게재 설명자료 참조 (<http://www.bundesfreiwilligendienst.de/der-bundesfreiwilligendienst/ueber-den-bfd.html>).

지 않는 것이고 다만 지원활동만을 하게 된다. 자원봉사자가 투입된다는 이유로 기존의 임금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신규 근로자 채용이 저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sup>10)</sup>

## 2) 자원봉사 활동 가능 영역

자원봉사자는 주로 공익 지향적인 시설에서 실무적인 보조업무를 담당하게 된다(제3조 제1항). 예컨대 병원, 양로원, 장애인보호시설, 고아원 등 아동복지시설, 아동보호시설, 학교, 청소년관련 시설, 스포츠단체, 도서관, 박물관, 문화시설, 국립공원·환경관련 관청 및 생태학적 교육시설 등과 같은 환경 및 자연 보호 분야, 사회통합 관련 분야, 시민보호 및 자연재해로부터의 보호와 관련된 시설 등이 해당된다.<sup>11)</sup> 실제 근무 가능한 기관은 연방자원봉사 공식 홈페이지([www.bundesfreiwilligen-dienst.de](http://www.bundesfreiwilligen-dienst.de)) 또는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홈페이지에서 찾아서 신청할 수 있고, 자원봉사를 원하는 자 스스로가 적절한 근무처에 접촉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sup>12)</sup>

## 3) 연방정부와 자원봉사자간의 서면 합의

연방정부와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자원봉사자와 근무기관간의 공동제안을 서면으로 합의해야 하고 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제8조).

- ① 자원봉사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 ② 자원봉사자가 소득세법 제32조 제6항<sup>13)</sup>에 따른 비과세금액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
- ③ 자원봉사의 대상이 되는 자(근무처)의 명칭 및 그 자(근무처)가 속하는 기관의 명칭
- ④ 자원봉사활동 의무 기간 및 자원봉사활동을 예정된 기간보다 먼저 종료시키는 경우에 대한 규정
- ⑤ 자원봉사활동 수행기간 동안 연방자원봉사법의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 알리는 내용
- ⑥ 용돈 및 현물지급의 종류 및 금액
- ⑦ 휴가일수와 세미나참가일수

## 4) 자원봉사자에 대한 대우

연방자원봉사법은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노동보호법, 연방휴가법상의 규정들이 적용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제13조).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금전적, 물적 지원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Zeit, das Richtige zu tun, 2011, S.63.

11)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Zeit, das Richtige zu tun, 2011, S.66.

12)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Zeit, das Richtige zu tun, 2011, S.61.

13) 납세의무자가 자녀가 있는 경우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조항이다.

### (1) 숙식, 근무복, 용돈 제공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기간 동안 숙박, 식사, 근무복, 적절한 수준의 용돈을 받게 된다. 다만, 숙식과 근무복 지급 대신 이에 상응하는 금품이 지급되는 것도 허용된다. 이는 자원봉사자와 근무처 간의 자유로운 합의를 통해 정하게 된다. 용돈은 사회법전 제6편에 따른 일반적인 연금보험에 적용되는 보험료부과기준 소득한계금액의 6%를 초과하지 않고, 당해 업무에서 비교 가능한 파트타임근로자가 받는 금액보다 적으면 적절한 수준인 것으로 본다(제2조 제4호).

### (2) 사회보험 등 법정 사회보장제도 적용

자원봉사자들은 원칙적으로 법정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의료보험, 요양보험, 실업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 등 법정 사회보험에 대한 종합보험료는 근무처에서 부담한다.<sup>14)</sup> 보험료 산정은 자원봉사자에게 지급된 용돈과 숙식제공 및 근무복 제공 등 현물지급 비용을 기초로 이루어진다. 자원봉사업무가 시작되기 전에 자원봉사자의 사회보험번호를 의료보험조합에 문의하여 처리해 놓아야 한다.<sup>15)</sup>

다만, 노인 자원봉사자는 이미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노인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자원봉사기관에서의 사회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이미 법정 노령연금수급연령<sup>16)</sup>에 도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원봉사자에게 지급되는 총 비용이 월 400유로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아직 완전한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하지 못하여 부분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는 400유로를 초과하여 지급되는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한편, 독일의 실업부조제도인 실업수당II 수급자도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 자원봉사자가 받는 용돈은 사회법전 제11조 제1항에 따라 실업수당II 수급자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실업수당II 금액 산정 시 반영된다.<sup>17)</sup>

### (3) 휴가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연간 최소한 24일의 법정휴가가 보장된다. 만일 자원봉사자가 12개월 미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가일이 1개월 당 12분의 1씩 줄어든다. 반면 12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1개월 당 12분의 1씩 증가된다.<sup>18)</sup>



14)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Zeit, das Richtige zu tun, 2011, S.19.

15)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Zeit, das Richtige zu tun, 2011, S.72.

16) 독일은 2007년 연금수급개시연령을 높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연금수급연령조정법(Altersgrenzanpassungsgesetz)이 제정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법정 노령연금수급개시연령은 2012년에 시작하여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존의 65세에서 67세로 높아진다.

17)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Zeit, das Richtige zu tun, 2011, S.62.

18)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Zeit, das Richtige zu tun, 2011, S.76.

(4) 주거수당(Wohngeld)

자원봉사자는 경우에 따라 주거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예컨대 근무처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인데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주거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주거수당 청구에 관한 사무는 자원봉사자가 새로 이사 간 지역의 주거수당을 담당하는 관청에서 관할한다. 주거수당청구의 전제조건에 대해서는 자원봉사활동이 개시되기 전에 관련 행정관청에서 설명해야 한다.<sup>19)</sup>

5) 자원봉사자의 세미나 참가 의무

법에서는 자원봉사자의 세미나 참가 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세미나를 통해 참가자들이 자원봉사의 목적, 사회적·생태적·문화적 전문지식을 습득하도록 하고, 공공의 복지에 대한 자원봉사자들의 책임감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자원봉사자들은 소개세미나, 중간세미나, 종료세미나에 최소한 각각 5일 동안 참가해야 한다. 전체적으로는 12개월 동안 25일간 세미나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 12개월을 초과하여 자원봉사를 하기로 합의하거나 혹은 자원봉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개월에 대해 1일씩 세미나기간이 늘어난다. 세미나참가시간은 근무한 시간으로 간주된다(연방자원봉사법 제4조).

IV. 명예직강화법의 주요 내용

1. 명예직강화법 제정의 배경과 목적

2009년 독일 총선결과 이루어진 연립협정(Koalitionsvereinbarung)에서는 시민의 사회참여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었고 이는 2013년 명예직강화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처음 만들어졌던 법 초안의 명칭은 “공익법의 간소화에 관한 법률 초안(Entwurf eines Gesetz zur Entbürokratisierung des Gemeinnützigkeitsrechts)”이었는데 연방상원 및 연방하원의 재정위원회에서 초안의 주요 내용은 거의 그대로 유지하면서 법률 명칭을 “명예직강화법”으로 변경하여 통과시켰다.

법률초안 작성 당시 제시된 입법목적은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시민의 사회참여는 경제성장, 사회적 통합, 복지, 미래를 위한 안정적인 민주주의 구조를 위해서 유지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재정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도 시민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시민의 사회참여의 장애요소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동법은 관료주의로 인한 복잡한 행정법규들과 제도들을 간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시민의 사회참여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회를 위해 연대하여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사회의 징표이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하는 조건들은 적극적인 시민사회



19)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Zeit, das Richtige zu tun, 2011, S.77.

가 보다 잘 발전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명예직 활동과 관련된 관료주의 제거와 절차의 간소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고, 세제상의 혜택을 위한 안정적인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명예직 활동가의 책임의 완화와 명예직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에 대한 개선이 시민의 명예직활동을 고양시킬 수 있다. 한편, 명예직 활동은 상당부분이 사단과 법인들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사단과 법인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활동에 적합한 법적 조건들이 개선되어야 한다.<sup>20)</sup>

## 2. 명예직강화법의 주요 내용

동법의 입법목적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이 법의 주된 목적은 명예직 활동에 대해 적용되는 제도의 관료주의를 제거하여 보다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명예직 활동 관련 조직과 활동가들이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전체의 당면 과제들이 보다 쉽게, 보다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sup>21)</sup> 명예직강화법의 내용은 기존 법령들의 관계 규정들이 이러한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기존 법령들을 개정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동법의 각 조는 각 관계 법령 개정의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제1조 조세기본법(Abgabenordnung)의 개정

제2조 소득세법(Einkommensteuergesetz)의 개정

제3조 소득세법 시행규칙(Einkommensteuer Durchführungsverordnung)의 개정

제4조 법인세법(Körperschaftsteuergesetz)의 개정

제5조 영업세법(Gewerbesteuergesetz)의 개정

제6조 민법의 개정

제7조 유한회사법의 개정

제8조 사회법전 제2편의 개정

제9조 사회법전 제12편의 개정

제10조 실업수당 II와 사회부조수당에 관한 시행규칙의 개정

제11조 실업자의 명예직활동에 관한 시행규칙의 개정

제12조 효력발생

이하에서는 세법상 명예직 관련 지원 내용, 명예직활동을 하는 법인구성원의 책임 제한 등 몇 가지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 1) 조세기본법상 법인의 세제 혜택 관련

조세기본법에서 개정된 내용은 주로 공익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세제상의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들에 관한 내용이다. 법인의 정관에는 그 목적과 목적의 실현방법이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정관상의 근거를 토대

20) BT-Drs 17/11316, S.8.

21) BT-Drs 17/12123, S.1

로 당해 법인에 세제상 혜택이 부여될지 여부가 검토될 수 있다. 공익 목적의 법인은 정관상 공익활동의 목적을 규정하고 이에 대해 관청에 신청하여 확인을 받아 세금 납부 시 이를 사용할 수 있다(조세기본법 제60조 제1항).

조세기본법 제53조에서는 세법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 법인의 자선활동 목적(Mildtätige Zwecke)과 관련하여 공익단체가 경제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지원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 조건을 구법에 비해 완화시켰다. 구법 하에서는 법인의 자선활동 목적에 대한 증명이 실무적으로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 문제되었었다.<sup>22)</sup> 개정법에 따르면 법인의 도움을 받은 대상자가 사회법전 제12편에 의한 사회부조 수급자라는 점만 증명하면 된다. 또한 사회부조수급 증명 이외의 다른 방법에 의한 증명도 재정관청의 판단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또한 조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법인은 세제상의 혜택을 받게 된 목적에 부합되게 자금을 사용해야 한다. 구법 하에서는 자금이 유입된 당해 연도 또는 유입 다음해 까지 당해 자금을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개정법에서는 자금이 유입된 이후 2년 내에 사용하도록 하여 과거보다 자금 사용기간을 1년 연

장시켰다.

한편, 스포츠 관련 단체에 대한 매출세(Umsatzsteuer) 부과 기준은 구법 하에서는 연간 35,000유로였는데 개정법에 의해 연간 45,000유로로 높아졌다. 즉, 스포츠 관련 단체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간 매출금액은 45,000유로까지이다(조세기본법 제67조의a).

## 2) 소득세법상 비과세 기준 금액

개정 소득세법에서는 공익활동을 하는 사단, 단체, 법인 등에서 활동하는 사람에 대한 비과세 금액이 높아졌다. 스포츠훈련지도활동가에 대해 지급되는 금액의 경우, 연간 2,400유로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소득세법 제3조 제26호). 구법 하에서는 2,100유로까지 비과세 되었던 것을 2,400유로로 올린 것이다. 또한 명예직활동가에 대해 지급되는 금액에 대한 비과세 기준은 기존의 연간 500유로에서 720유로로 높아졌다(소득세법 제3조 제26호의a). 다만, 명예직활동가에 대한 비과세금액은 월 지급금액 기준으로 보면 기존의 50유로에서 60유로로 오른 것에 불과하여, 명예직활동의 새로운 붐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개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 지적된다.<sup>23)</sup>



22) Hans-Peter Roth, Reform des Gemeinnützigkeitsrechts - "Gesetz zur Stärkung des Ehrenamtes", SteuK 2013, 136, S.137.

23) Runte Schuütz, Das Ehrenamtsstärkungsgesetz - neue Impulse für den Non-Profit-Bereich?, DStR 2013, 1261, S.1266.

### 3) 명예직활동 관련 법인구성원의 책임 제한

명예직강화법에 의해 민법도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는 법인 또는 사단의 구성원에 대한 책임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다. 기존에는 책임의 한계에 관한 규정이 무급으로 활동하는 이사에 대해서만 적용되었는데, 개정법에서는 무상으로 활동하는 특별한 기관의 대리인 및 일반 구성원에 대해서도 책임 제한이 적용되도록 하였다(민법 제31조의a, 제31조의b). 법인 또는 사단 구성원은 정관상의 목적에 따라 부과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구성원이 사단 또는 법인이 알지 못한 상황에서 활동하거나 업무가 부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활동하다가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대해서는 이러한 책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구성원이 소속 법인 또는 사단에서 직업 활동 내지 영업 활동을 하는 중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도 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sup>24)</sup>

### 4) 공익유한회사(gGmbH)의 설립

명예직강화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세제상

의 혜택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이른바 “공익유한회사”의 설립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가 다투어졌고, 뮌헨고등법원은 이러한 형태의 유한회사는 유한회사법 제4조에 따라 허용된 유한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에 위반되는 형태의 회사라고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다.<sup>25)</sup> 그러나 명예직강화법에 의해 현행 유한회사법 제4조에서는 공익유한회사가 오로지 직접적으로 세제상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를 의미한다고 규정하여 이제는 법적 근거를 토대로 공익유한회사의 설립이 가능해졌다.

### 5) 사회보장법상 비과세 금액에 대한 고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상 달라진 비과세 기준 금액은 사회법전상 보험료 및 부담금 납부 시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명예직활동으로 받은 연간 720유로, 스포츠훈련지도활동가가 받은 연간 2,400유로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 부과 기준 소득에서도 제외된다.

## V. 결어 및 시사점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독일은 고령자의 경제



24) Hans-Peter Roth, Reform des Gemeinnützigkeitsrechts - "Gesetz zur Stärkung des Ehrenamtes", SteuK 2013, 136, S.139.

25) OLG München vom 13.12.2006(31 Wx 084/06, BeckRS 2006, 15209), Hans-Peter Roth, Reform des Gemeinnützigkeitsrechts - "Gesetz zur Stärkung des Ehrenamtes", SteuK 2013, 136, S.140.

활동을 촉진하고 노인에 대한 사회보장정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노인들이 자원봉사 활동과 명예직활동 등을 통해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법제와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자원봉사법과 명예직강화법 등이 제정되었다. 특히 연방자원봉사제도의 경우, 2011년 7월 이후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징병제와 대체복무로서의 공익근무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그간 여러 분야에서 공익적 활동을 담당해 왔던 공익근무의 공백을 자원봉사자를 통해 보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은 징병제와 공익근무제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또 다른 중요한 시사점을 보여준다.

독일의 노인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법제의 특징은 노인들이 문화, 교육, 사회복지, 환경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명예직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는 봉사기간 동안 일정 정도의 용돈 지급 및 숙식, 의복 등의 물적 지원을 하고, 봉사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으며, 봉사활동자에 대해서도 봉사기간에 대해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되, 지급받은 금품과 현물비용을 기준으로 봉사근무처에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공익 관련 단체와 법인에 대해서도 공익활동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있다. 또한 연방정부

를 중심으로 노인 사회참여활동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홍보 및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자발적인 시민조직인 노인 단체들이 정부와의 연계 하에서 각 지역 및 전국 차원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도 전체인구 중 고령자 비율이 급속하게 높아지고 있고 평균수명은 계속 연장되고 있어 노인들의 사회참여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이는 소득 활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것과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 노인들이 자원봉사 등 다양한 형식에 의해 사회참여를 함으로써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균형 있는 생활, 사회공동체와 단절되지 않는 문화적인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법제와 정책을 통해 뒷받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를 통해 현재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세대 간 소통의 단절 내지 반목을 해소하기 위한 돌파구 마련도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독일의 노인 자원봉사활동  
관련 주요 단체<sup>26)</sup>

- ① 연방자원봉사중개업무공동체(Bundesarbeitsgemeinschaft der Freiwilligenagenturen) - 이 단체를 통해 각 연방주별로 활동할 수 있는 자원봉사기관들을 찾을 수



26) 이 단체들은 독일연방정부 사이트(<http://www.bundesregierung.de>)에서 소개하고 있는 단체들이다.

있다.<sup>27)</sup>

② 연방노인조직업무공동체(Bundesarbeitsgemeinschaft der Senioren-Organisationen e.V)<sup>28)</sup>

③ 연방노인사무소업무공동체(Bundesarbeitsgemeinschaft Seniorenbüros) - 주로 노인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한다. 노인들이 보다 좋은 조건에서 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사무소들의 전국적 연합조직이다.<sup>29)</sup>

④ 세대 간 만남의 집(Mehrgenerationenhäuser) -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다양한 연령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나 서로 각자의 능력이나 전문지식을 다른 사람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sup>30)</sup>

**박 귀 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Zeit, das Richtige zu tun, 2011.

Deutscher Bundestag, BT-Drucksache 17/11316.

Deutscher Bundestag, BT-Drucksache 17/12123.

Die BAGSO, Ergebnisse der BAGSO-Befragung "Freiwilliges Engagement älterer Menschen – Was hat sich bewährt? Was muss sich ändern?", 2013.

Hans-Peter Roth, Reform des Gemeinnützigkeitsrechts - "Gesetz zur Stärkung des Ehrenamtes", SteuK 2013, 136.

Runte Schuütz, Das Ehrenamtsstärkungsgesetz - neue Impulse für den Non-Profit-Bereich?, DStR 2013, 1261.

Statistisches Bundesamt: Langhe Reihen: Bevölkerung nach Altersgruppen, 12. koordinierte Bevölkerungsvorberechnung: Bevölkerung Deutschlands bis 2060.

Statistisches Bundesamt, Alter in Wandel, 2012.

## 인터넷

<http://www.bpb.de>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독일연방중앙정치교육) 홈페이지).

<http://www.bundesregierung.de> (독일 연방정부 홈페이지).

<http://www.bagfa.de> (Bundesarbeitsgemeinschaft der Freiwilligenagenturen(연방자원봉사중개업무공동체) 홈페이지).

<http://www.bagso.de> (Bundesarbeitsgemeinschaft der Senioren-Organisationen e.V(연방노인조직업무공동체) 홈페이지).

<http://www.seniorenbueros.de> (Bundesarbeitsgemeinschaft Seniorenbüros(연방노인사무소업무공동체) 홈페이지).

<http://www.mehrgenerationenhaeuser.de> (Mehrgenerationenhäuser(세대 간 만남의 집) 홈페이지).

27) 인터넷 사이트는 <http://www.bagfa.de>.

28) 인터넷 사이트는 <http://www.bagso.de>.

29) 인터넷 사이트는 <http://www.seniorenbueros.de>.

30) Mehrgenerationenhäuser를 직역하면 "여러 세대의 집"인데 실제 의미와 목적을 고려하여 "세대간 만남의 집"으로 의역하였다. 인터넷 사이트는 <http://www.mehrgenerationenhaeuser.de>.